

사전컨설팅 제도

1 사전컨설팅 제도란

- 감사대상 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요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제시 또는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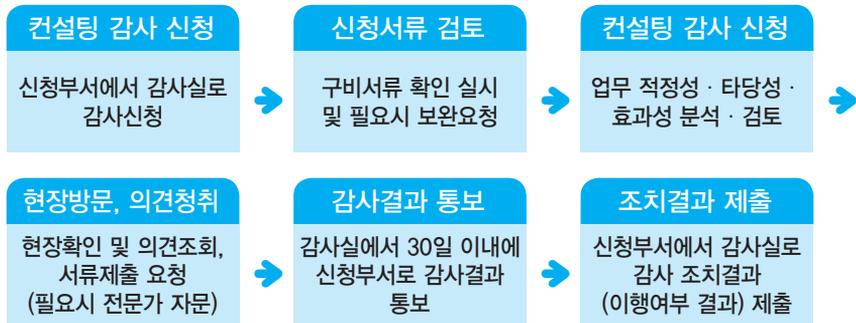
2 적용대상 업무 범위

- 감사대상 업무로서 규정·제도 등이 모호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 판단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주저되는 사항
 - ※ 단순 민원해소 등 소극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,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은 반려될 수 있음

3 신청방법

-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부서·기관은 감사실로 컨설팅 대상 사업(또는 업무 분야)*과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
 - * 00지역본부 복무관리 분야, 계약분야, 위험성평가 분야 등

4 처리절차



적극행정 면책제도

1 적극행정 면책제이란

- 감사결과 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

2 적용대상 업무 범위 : 감사대상 업무 전반

3 면책 대상자 : 감사대상기관 소속직원

4 적극행정 면책요건 :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,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
-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
- ③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
5 적극행정면책 신청·승인 절차



6 현장면책제도 :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심의 판단



※ 현장면책의 범위 : 주의, 통보, 현지조치

모범사례 포상 제도

1 모범사례 포상 제도란

-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국민 편익과 행정 능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모범직원이나 모범기관(부서)을 포상·격려하고, 해당 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는 제도

2 모범사례 요건

- 사업방식 개선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한 모범직원이나, 업무실적이나 사업성과 등이 다른 기관·부서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모범부서·기관

3 추천 방법

- 종합·특정감사 시 감사반에 추천하거나, 열린감사실 소통계시판* 활용
* 나누리계시판 > 윤리경영 > 열린감사실 소통계시판

4 포상 내용

- 이사장 및 산하기관장 명의 우수기관 및 직원 표창
- 감사실 주관 우수직원 해외연수 우선 추천